

의안 번호	831
----------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안연월일 : 2011. 08. 22(월)
- 제안자 : 서경환의원 외 5명
- 위원회회부 : 2011. 08. 26(금)
- 위원회심사 : 2011. 09. 05(월)

2. 제안이유

-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특정장비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되고, 이동소음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규정(안 제6조)
-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규정(안 제7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행정지도, 점검 사항(안 제10조)
-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2조)

4.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생활환경 보호와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규정을 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 배출소음을 상시측정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배출소음에 대한 소음도 상시측정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과 측정 방법,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의 지도·점검사항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사항을 적발할 경우에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제정 취지가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의결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연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6.9>

⑤ 삭제<2009.6.9>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9]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6.9>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6.9>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6.9>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0.6.30](#)>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개정 2010.6.30>

별표 8. 9